2022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동건	910320-1091016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월별	보수월액(고지금액)		소득월액(납부금액)	
결길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0	0	0	0
02월	0	0	0	0
03월	0	0	0	0
04월	188,430	23,120	0	0
05월	188,430	23,120	0	0
06월	188,430	23,120	0	0
07월	188,430	23,120	0	0
08월	188,430	23,120	0	0
09월	188,430	23,120	0	0
10월	188,430	23,120	0	0
11월	188,430	23,120	0	0
12월	188,430	23,120	0	0
연말정산	0	0		
합계	1,695,870	208,080	0	0
총합계				1,903,95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동건	910320-1091016	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0	0
02월	0	0
03월	0	0
04월	235,800	0
05월	235,800	0
06월	235,800	0
07월	242,590	0
08월	242,590	0
09월	242,590	0
10월	242,590	0
11월	242,590	0
12월	242,59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	험료 납부금액	0
실업크레딧 납부금액		0
합계	2,162,940	0
	총합계	2,162,940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동건	910320-1091016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·	류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:	호	주피보험	l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종피보험자20	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디비손해보험 -	주식회사	다이렉트개	인용			
보장성	201-81-45	593	2202203192	13000	910320-****	이동건	0
	디비손해보험 =	주식회사	다이렉트이	륜차			
보장성	201-81-45	593	220222696209000		910320-*****	이동건	46,600
	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	실손의료비보험1804				
보장성	201-81-45	593	320182054	1401	910320-*****	이동건	78,970
	디비손해보험 <i>=</i>	주식회사	아이(I)러브(LOVE)건	건강보험1808			
보장성	201-81-45	593	320182049	9867	910320-****	이동건	1,080,200
	인별합계금액						1,205,77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동건	910320-1091016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134-90-90674	김한규정형외과	일반	62,000
134-92-03611	고잔하나이비인후과	일반	31,100
127-96-77296	서울이비인후과	일반	5,000
220-02-52426	아로마약국	일반	7,100
134-90-39279	서울중앙의원	일반	5,000
220-96-00024	하나이비인후과병원	일반	32,800
134-27-87189	해맑은약국	일반	27,700
237-90-00466	조웰구강내과치과의원	일반	4,500
460-46-00587	8층약국	일반	38,000
221-95-12211	연세위드이비인후과의원	일반	29,900
693-05-01830	유니팜약국	일반	2,9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46,0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4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	
이동건	910320-1091016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인별합계금액			246,0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실손의료보험금]

(조회기간 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피보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동건	910320-1091016	

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

(단위:원)

상호	상품명	보험계약자		수령금액 계
사업자번호	계약(증권)번호	수익자		T 당급객 계
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 손의료비	910320-1091016	이동건	942,143
201-81-45593	320182054401	910320-*****	이동건	342,143
인별합계금액				942,143

1.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동건	910320-1091016	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	
9,061,670	12,827,334	

■ 전통시장 분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	
0	16,000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2022년 합계	9,606,284	16,000	53,610	79,000	9,754,894
1월~6월	4,745,251	0	12,800	48,000	4,806,051
7월~12월	4,861,033	16,000	40,810	31,000	4,948,843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일반	8,408,477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전통시장	16,000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53,61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30116-7367358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7-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동건	910320-1091016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도서공연등	79,000
신용카드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1,197,807
인별힙	·계금액			9,754,894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
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동건	910320-1091016	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	
0	1,635,750	

■ 전통시장 분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	
0	0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2년 합계	1,624,940	0	0	10,810	1,635,750
1월~6월	663,570	0	0	10,810	674,380
7월~12월	961,370	0	0	0	961,37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870-88-01143	주식회사 에스에스지 닷컴	일반	1,000
직불카드 등	220-81-83676	주식회사 지마켓	일반	100,528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일반	1,523,412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도서공연등	10,81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30116-7367358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9-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동건	910320-1091016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인	별합계금액			1,635,75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
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10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동건	910320-1091016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	
9,673,215	3,838,154	

■ 전통시장 분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	
31,180	70,231	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2022년 합계	1,416,509	1,000	0	32,288	1,449,797
1월~6월	311,752	0	0	0	311,752
7월~12월	1,104,757	1,000	0	32,288	1,138,045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일련번호: 20230116-7367358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11-

2022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동건	910320-1091016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종류	01월	02월	03월	04월	공제대상금액
TE	σπ	05월	06월	07월	08월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0	0	0	210,69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94,782	6,280	594,500	122,649	1,416,509
		63,388	54,004	262,100	8,116	
		0	0	0	0	
현금영수증	전통시장거래	0	0	0	0	1,000
		0	1,000	0	0	
		0	0	0	0	
현금영수증	도서.공연비등 거래	0	0	0	32,288	32,288
		0	0	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 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기본내역 [연금저축]

(조회기간 : 2022년 01~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동건	910320-1091016

■ 연금저축 납입내역 (단위:원)

상호	사업자번호	당해년도 납입금액 (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)	당해년도 인출금액 (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중 인출금액 포함)	순납입금액 (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)
계좌	번호	ISA계좌만기 전환납입금액	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	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
한국투자증권 (주)	116-81-04504	800,000	0	800,000
72620	55822	0	0	0
순납입금	금액 합계			800,000

※ 연금계좌(연금저축, 퇴직연금)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.

-13-

- 1. 연금저축(2001.1.1. 이후 가입) : 근로자(사업소득자)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
- 2. 세액공제 대상금액 : 납입액(전환 신청 금액 포함)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
- 3. 공제 한도 :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(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,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)
- 4.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퇴직연금]

(조회기간 : 2022년 01~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동건	910320-1091016

■ 퇴직연금 납입내역 (단위:원)

상호	사업자번호	당해년도 납입금액 (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)	당해년도 인출금액 (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중 인출금액 포함)	순납입금액 (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)
계좌번호	연금구분	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	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	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
한국투자증권 (주)	116-81-04504	600,000	0	600,000
6339666029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	0	0	0
순납입금	- 구액 합계	600,		

- ※ 연금계좌(연금저축, 퇴직연금)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.
- 1. 퇴직연금 :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(회사 부담금 제외)
- 2. 공제 대상: 납입액(전환 신청 금액 포함)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
- 3. 공제 한도 :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(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,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)

-14-

4.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: 2022년 03,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동건	910320-1091016		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대출종류 (상품명)	최초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	상환 기간	주택 취득일	저당권 설정일	연간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		차입금	고정금리 차입금	비거치식 상환차입금	당해년 원금상환액		
한국주택금융공사 (104-81-86269)	해당없음 (내집마련디딤돌대 . 출)	2022-02-14 2052-02-14	30년	2022-02-14	2022-02-14	1,758,266	1,758,266
		99,700,000	99,700,000	0	0		, ,

- 1. 공제 대상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-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,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 한도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